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54호 2026. 8. 18. (화)

공 고

○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3.

목 포 시 장

1. 제정 이유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3명 :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 시의회 추천 의원 1명
- 공모사업 분야 외부 추천 전문가 및 관광·문화·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4명 이내

○ 위원회 임기(안 제4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회 심의대상(안 제9조제3항)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 보고 대상사업
-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3. 제정규칙안 : 붙임 1

4. 관계법령

-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감사실) :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 개선사항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6. 8. 13. ~ 2026. 9. 3. (21일간)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9. 3.까지 목포시장(기획

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다. 제출방법 : 우편, FAX(061-270-3578), 직접 방문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3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목포시 규칙 제 호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관광,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알게 된 공모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가 종료된 후에도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검토 자료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보고 대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